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1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 1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 제안이유

- 환경부·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급수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급수구역과 급수설비 및 급수공사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나. 급수공사의 승인 및 시행, 준공검사,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의 납부 등 급수공사와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 다. 수도의 사용,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급수중지 및 폐전 등 급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 라. 수도사용요금의 부과·조정 및 가산금, 각종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
- 마.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옥내배관의 개량지원, 정수처분, 급수설비의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

- 바. 요금 등의 조정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하여야 함.(안 제47조)
- 사.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48조)
- 아.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고,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함.(안 제49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우리시에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업체는 몇 개인가?		○ 현재 7개 업체가 있음.	
○ 7개 업소에 대해 부천시에 급수공사를 전부 주고 있는데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자에게는 급수공사 대행사업자로 확대 지정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겠음.	
○ 7개 업체에게 부천시에서 급수 공사 대행업을 지정한 사유 및 지정한 시기는 언제인가?		○ 대행업으로 지정한 시기는 약 30년 정도 되었으며 대행업 지정사유는 급수공사가 소액이며, 공사의 시급성 및 일반인등 공사비를 부담하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음.	
○ 입찰경쟁을 도입하여 운영 계획은 있는가?		○ 소규모 공사며, 시급성 있어 현재로서는 대행업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노후 옥내배관 공사시 세척 및 갱생 공사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데 있어서 연면적을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및 공동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이며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액 보조할 수 있음	
○ 노후 옥내배관 공사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는 있는가?		○ 서울시만 시행하고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자에게는 급수공사 대행사업자로 시에서 확대 지정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임 1.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363호
의결 년월일	2009. 1. 22. (제149회)

제안년월일 : 2009. 1. 21.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에서 틀리게 사용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부천시의회를' '시의회'로 (안 제3조) '주민의 공공급수'를 '주민의 공동급수'로 (안 제4조제2호)로 수정하고자 함

3. 권고 조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자에게는 급수공사 대행사업자로 시에서 확대 지정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부천시의회’를 ‘시의회’로 (안 제4조제2호) ‘주민의 공공급수’를 ‘주민의 공동급수’ 로 수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 ~ 제2조 생략</p> <p>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에서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부천시의회의</u> 동의를 받아 시의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그 밖의 비상사태에 따라 긴급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 때 <u>부천시의회에</u>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u>공공급수</u>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p>제5조 ~ 제38조 생략</p>	<p>제1조 ~ 제6조 원안과 같음</p> <p>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에서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시의회의</u> 동의를 받아 시의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그 밖의 비상사태에 따라 긴급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 때 <u>시의회에</u>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u>공동급수</u>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p>제5조 ~ 제38조 원안과 같음</p>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수도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이하의설비(이하 “흡수정설비”라 한다)”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 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전용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9.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0. “호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요금 부과를 위하여 점검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1. “점검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급수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호별수도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2.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및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14. “구경별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에서 시장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의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그 밖의 비상사태에 따라 긴급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 때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또는 동일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 간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수전분리공사. 다만, 흡수정설비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개조공사: 급수관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고 개조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 및 그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받은 자는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현장측량 및 수리계산수수료 등을 말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급수공사 신청자는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7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금액이 확정된 후에 수수료를 납부한다.

④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에

승인하며, 흡수정설비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하며,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급수공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시공하는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급수공사 준공 후에 정산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위탁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착공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즉시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의 공급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 대행업자는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대행업의 지정) ① 급수공사대행업의 지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 ② 시장이 지정한 급수공사대행업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급수공사대행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1. 신규지정: 1만원
- 2. 갱신지정: 5천원

제11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수도계량기의 교체, 수선공사 또는 철거공사 및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의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에서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를 말한다)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자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다만, 호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호별계량기를 시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④ 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에서부터 건물 안쪽의 급수설비까지의 시설에 대한 피해 및 동파 예방 등의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실제로 공사한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하며,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3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급수공사비는 공사를 준공한 후에 「부천시 급수공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시공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비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통합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호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각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다른 용도와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분되었으며, 호별 분양 또는 임대되는 건축물은 제2항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산정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사용)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부담·산출방법·납부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흡수정설비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흡수정설비의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및 손피자부담금의 징수 등) ① 원인자부담금 및 손피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납부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환불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② 수도시설의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복구하여야 할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손피자를 찾아서 피해복구를 명하여야 하며, 손피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시에서 복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 신청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에 따른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자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급수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급수공사를 하는 자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역류방지밸브의 구경·설치대상 및 위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도사용자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및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다.

④ 시장은 이미 설치된 수도계량기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손괴자, 원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송·배수관, 급수관 및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7. 급수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8.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신고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한 후 직권으로 급수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①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관리인을 별도로 선정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와 수도 사용료 등의 징수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공용 급수설비 급수에 따른 요금은 별표 2의 가정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몰,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유지 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 가족, 고용원,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 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는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할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급수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 등과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6. 제41조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7.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 및 수수료

제27조(요금의 징수원칙)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의 부과)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효율표에 따르며, 수도 계량기 구경별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시장이 호별계량기와 점검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호별계량기에 한하여 수도계량기 구경별정액요금을 부과한다.

③ 제3조 단서 중에서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 급수할 경우의 요금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에 따른다.

④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수도전에는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효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업소의 업종으로 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설비를 분리 설치한 후에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에서 세대당 월 15 입방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계량한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부분으로 누수발견이 곤란한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 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은 가정용에는 1단계의 요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업종은 2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수돗물 사용량을 일괄 개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급수설비를 폐전할 때
2. 급수를 중지할 때
3.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을 해제한 때
4. 시장이 수시로 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수돗물 사용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같은 주소의 수도급수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수돗물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⑤ 같은 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 간 분리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의 요금은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수돗물 사용량의 인정) ① 수돗물 사용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수돗물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수돗물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4

개월의 평균치를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전 4개월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의 평균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1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를 말한다)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공동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도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를 말한다)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하되, 공동주택은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세대수를 사용가구로 본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수도물 사용량을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차기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수수료 및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납은 차기 수도요금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은 청구인의 뜻에 따라 국가기관(공인기관을 포함한다)에 의뢰하거나 시장이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험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25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등이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기 경과 후 1월 이내 완납 시에는 체납액의 $\frac{3}{100} \times 12\text{개월} \times \text{연체일수} \div 365\text{일}$

2. 납기를 1월 이상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frac{3}{100}$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고지서로 한다.

③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요금(수도계량기구경별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고지(이메일 고지를 말한다)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하여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일시 급수사용금과 선납) ① 시장은 일시적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수돗물 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를 종료한 후에 이를 정산하되,

과부족액은 차기 요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수도전 1천당 4천원. 다만, 수도계량기 구경 75밀리미터 이상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4천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4천원
4.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5천원
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 가. 급수관 구경 25mm 이하: 5천원
 - 나. 급수관 구경 32mm 이상: 7천원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또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 업종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중수도 설치를 완료하고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및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과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④ 요금자동납부 수용가는 월 사용 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월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가정용 수도사용자 중에서 자가 검침 참여자에게는 1회당 5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전자고지 및 핸드폰고지 참여 수도사용자등에게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보통우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관리

제39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옥내배관의 개량지원) ① 시장은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이하 “세척등”이라 한다)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 강관 등 비 내식성 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부식 영향으로 탁도, 철, 납, 구리 및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의 내용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건물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을 말한다.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제41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으로 철거하여 요금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자
6. 정수처분 중인 급수설비를 무단으로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수돗물을 판매한 자
8.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상수도업무 관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당초 지정된 급수의 종별과 다른 용도로 수돗물을 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에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시장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가정용 단독가구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부서에 조회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업무 관련 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 경우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공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교체한다. 이 경우 수도계량기의 대금과 교체 비용 등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된다.

제46조(수도계량기 점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점검,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7조(이의신청) ① 요금 또는 그 밖의 부담금의 조정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9조(소멸시효)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제1호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 설 분 담 금(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수도계량기 구 경 별	금 액	비 고
13mm	120,000	개조 시에는 신규 구경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mm	225,000	
25mm	375,000	
32mm	760,000	
40mm	1,200,000	
50mm	3,000,000	
75mm	6,000,000	
100mm	11,850,000	
150mm	24,000,000	
200mm	37,500,000	
250mm	49,350,000	
300mm	107,436,000	
350mm	134,857,000	
400mm 이상	146,822,000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제28조제1항 관련)

(단위: m³/원)

수도계량기 구경별정액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비 고	
수도계량기 구경별	요 금	업 종 별	사 용 구 분		요금		
13mm	620	가 정 용	1단계	20 이하	340		
20mm	1,300		2단계	20 초과 30 이하	540		
			3단계	30 초과	740		
25mm	2,010	산 업 용	1단계	100 이하	560		
32mm	3,590		2단계	100 초과 500 이하	780		
40mm	4,900		3단계	500 초과	950		
50mm	8,590	일 반 용	1단계	100 이하	690		다만, 학교(초· 중·고등학교)는 1단계 단일요금을 적용함.
75mm	16,270		2단계	100 초과 500 이하	990		
100mm	27,120		3단계	500 초과	1,240		
150mm	60,220	대 중 탕 용	1단계	1,000 이하	530		
200mm	97,000		2단계	1,000 초과 2,000 이하	660		
250mm	143,870		3단계	2,000 초과	850		
300mm	200,830						
350mm	251,580						
400mm	282,910						

[별표 3]

업종별 구분표(제29조제1항 관련)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01)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따른 가사용 급수(기숙사 포함)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산업용 (02)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공장
일반용 (03)	1.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급수 2.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변경 또는 개설한 급수설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축물 등에 한한다) 3. 운반급수(최종단계 효율을 적용한다) 4. 수도관 파손에 따른 누수(최종단계 효율을 적용한다)
대중탕용 (04)	일반대중 목욕장업

[별표 4]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기 준		행 정 처 분 기 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설비를 부정사용한 자	
1. 수도물의 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가정용은 2배 부과	50,000원	· 부정 급수설비 철거명령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함 금액의 5배 ※ 가정용은 2배 부과	50,000원	· 부정 급수설비 철거명령
3. 수도계량기의 작동 방해, 훼손, 무단 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함 금액의 5배 ※ 가정용은 2배 부과	20,000원 ※ 가정용은 10,000원 부과	· 수도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 명령 불이행 시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함.
4. 수도계량기에 물건 및 공작물 설치, 봉인파손, 매몰		10,000원 ※ 가정용은 5,000원 부과	· 원상회복명령 ※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허가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2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 명령 불이행 시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함.
6. 정수처분 중인 급수설비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원 ※ 가정용은 5,000원 부과	· 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업종 위반			· 업종위반일부터 가산하여 차액 추징 및 업종 직권 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함.

[수정안 포함]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수도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이하의설비(이하 “흡수정설비”라 한다)”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전용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9.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0. “호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요금 부과를 위하여 점검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1. “점검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급수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호별수도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2.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및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14. “구경별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에서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의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그 밖의 비상사태에 따라 긴급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 때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또는 동일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 간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수전분리공사. 다만, 흡수정설비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개조공사: 급수관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고 개조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 및 그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받은 자는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현장측량 및 수리계산수수료 등을 말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급수공사 신청자는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7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금액이 확정된 후에 수수료를 납부한다.

④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에 승인하며, 흡수정설비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하며,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정한 급수공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시공하는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급수공사 준공 후에 정산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위탁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착공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즉시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의 공급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 대행업자는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대행업의 지정) ① 급수공사대행업의 지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이 지정한 급수공사대행업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급수공사대행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신규지정: 1만원

2. 갱신지정: 5천원

제11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수도계량기의 교체, 수선공사 또는 철거공사 및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의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에서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를 말한다)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자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다만, 호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호별계량기를 시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④ 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에서부터 건물 안쪽의 급수설비까지의 시설에 대한 피해 및 동파 예방 등의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실제로 공사한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하며,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3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급수공사비는 공사를 준공한 후에 「부천시 급수공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시공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비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통합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호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각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다른 용도와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분되었으며, 호별 분양 또는 임대되는 건축물은 제2항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산정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사용)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부담·산출방법·납부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흡수정설비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흡수정설비의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수도사용자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 및 손피자부담금의 징수 등) ① 원인자부담금 및 손피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납부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환불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② 수도시설의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복구하여야 할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손피자를 찾아서 피해복구를 명하여야 하며, 손피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시에서 복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 신청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③ 하자보수에 따른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자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급수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급수공사를 하는 자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역류방지밸브의 구경·설치대상 및 위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도사용자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및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다.

④ 시장은 이미 설치된 수도계량기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손피자, 원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송·배수관, 급수관 및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7. 급수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8.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신고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한 후 직권으로 급수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①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관리인을 별도로 선정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와 수도사용료 등의 징수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용 급수설비 급수에 따른 요금은 별표 2의 가정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몰,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 가족, 고용원,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는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할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급수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 등과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 6. 제41조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
- 7.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4장 요금 및 수수료

제27조(요금의 징수원칙)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의 부과)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수도계량기 구경별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시장이 호별계량기와 점검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호별계량기에 한하여 수도계량기 구경별정액요금을 부과한다.

③ 제3조 단서 중에서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 급수할 경우의 요금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에 따른다.

④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수도전에는 수도계량기 구경별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물 사용량이 많은 업소의 업종으로 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설비를 분리 설치한 후에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에서 세대당 월 15입방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계량한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부분으로 누수발견이 곤란한 누수의 경우에는 누수 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은 가정용에는 1단계의 요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업종은 2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수돗물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급수설비를 폐전할 때
2. 급수를 중지할 때
3.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을 해제한 때
4. 시장이 수시로 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수돗물 사용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같은 주소의 수도급수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수돗물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⑤ 같은 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 간 분리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의 요금은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수돗물 사용량의 인정) ① 수돗물 사용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수돗물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수돗물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4개월의 평균치를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전 4개월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의 평균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1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를 말한다)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공동주택에서 1개의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를 말한다)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하되, 공동주택은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세대수를 사용가구로 본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수돗물 사용량을 제31조제2항에 따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차기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수수료 및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납은 차기 수도요금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은 청구인의 뜻에 따라 국가기관(공인기관을 포함한다)에 의뢰하거나 시장이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험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25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등이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기 경과 후 1월 이내 완납 시에는 체납액의 $\frac{3}{100} \times 12\text{개월} \times \text{연체일수} \div 365\text{일}$

2. 납기를 1월 이상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frac{3}{100}$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고지서로 한다.

③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요금(수도계량기구경별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등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전자고지(이메일 고지를 말한다)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일시 급수사용금과 선납) ① 시장은 일시적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수도물 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를 종료한 후에 이를 정산하되, 과부족액은 차기 요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7조(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수도전 1전당 4천원. 다만, 수도계량기구경 75밀리미터 이상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4천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4천원

4.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5천원

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mm 이하: 5천원

나. 급수관 구경 32mm 이상: 7천원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또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 업종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중수도 설치를 완료하고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및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과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 ④ 요금자동납부 수용가는 월 사용 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월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가정용 수도사용자 중에서 자가 검침 참여자에게는 1회당 5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 ⑥ 전자고지 및 핸드폰고지 참여 수도사용자에게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보통우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관리

제39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옥내배관의 개량지원) ① 시장은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이하 “세척등”이라 한다)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 이후 급수관의 세척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 강관 등 비 내식성 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부식 영향으로 탁도, 철, 납, 구리 및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의 내용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건물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을 말한다.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제41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으로 철거하여 요금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자
6. 정수처분 중인 급수설비를 무단으로 개선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수돗물을 판매한 자
8.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상수도업무 관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당초 지정된 급수의 종별과 다른 용도로 수돗물을 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에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시장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가정용 단독가구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할 때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부서에 조회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2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업무 관련 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 경우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공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교체한다. 이 경우 수도계량기의 대금과 교체 비용 등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된다.

제46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7조(이의신청) ① 요금 또는 그 밖의 부담금의 조정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9조(소멸시효)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제1호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 설 분 담 금(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수도계량기 구 경 별	금 액	비 고
13mm	120,000	개조 시에는 신규 구경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mm	225,000	
25mm	375,000	
32mm	760,000	
40mm	1,200,000	
50mm	3,000,000	
75mm	6,000,000	
100mm	11,850,000	
150mm	24,000,000	
200mm	37,500,000	
250mm	49,350,000	
300mm	107,436,000	
350mm	134,857,000	
400mm 이상	146,822,000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제28조제1항 관련)

(단위: m³/원)

수도계량기 구경별정액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비 고	
수도계량기 구경별	요 금	업 종 별	사 용 구 분		요금		
13mm	620	가 정 용	1단계	20 이하	340		
20mm	1,300		2단계	20 초과 30 이하	540		
25mm	2,010		3단계	30 초과	740		
32mm	3,590	산 업 용	1단계	100 이하	560		
40mm	4,900		2단계	100 초과 500 이하	780		
50mm	8,590		3단계	500 초과	950		
75mm	16,270	일 반 용	1단계	100 이하	690		다만, 학교(초· 중·고등학교)는 1단계 단일요금을 적용함.
100mm	27,120		2단계	100 초과 500 이하	990		
150mm	60,220		3단계	500 초과	1,240		
200mm	97,000						
250mm	143,870	대 중 탕 용	1단계	1,000 이하	530		
300mm	200,830		2단계	1,000 초과 2,000 이하	660		
350mm	251,580		3단계	2,000 초과	850		
400mm	282,910						

[별표 3]

업종별 구분표(제29조제1항 관련)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01)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따른 가사용 급수(기숙사 포함)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 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산업용 (02)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공장
일반용 (03)	1.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급수 2.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변경 또는 개설한 급수설비(건축허가를 받 아 시공 중인 건축물 등에 한한다) 3. 운반급수(최종단계 효율을 적용한다) 4. 수도관 파손에 따른 누수(최종단계 효율을 적용한다)
대중탕용 (04)	일반대중 목욕장업

[별표 4]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기 준		행 정 처 분 기 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급수설비를 부정사용한 자	
1. 수도물의 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가정용은 2배 부과	50,000원	· 부정 급수설비 철거명령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함 금액의 5배 ※ 가정용은 2배 부과	50,000원	· 부정 급수설비 철거명령
3. 수도계량기의 작동 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함 금액의 5배 ※ 가정용은 2배 부과	20,000원 ※ 가정용은 10,000원 부과	· 수도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 명령 불이행 시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함.
4. 수도계량기에 물건 및 공작물 설치, 봉인 파손, 매몰		10,000원 ※ 가정용은 5,000원 부과	· 원상회복명령 ※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허가받지 아니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2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 ※ 명령 불이행 시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함.
6. 정수처분 중인 급수설비의 무단개전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0,000원 ※ 가정용은 5,000원 부과	· 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업종 위반			· 업종위반일부부터 가산하여 차액 추징 및 업종 직권 변경 ※ 추징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함.

<관계 법령발췌서>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

○ 지방공기업법

第22條(料金)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直營企業의 給付에 대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料金を 徵收할 수 있다.<改正 1992·1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料金は 적정하여야 하고, 地域間 料金水準의 衡平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당해 地方直營企業이 제공한 給付의 原價를 報償함과 아울러 企業으로서 繼續性を 維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1980·1·4, 1992·12·8>

③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營業비용 및 자본비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定한다. <신설 2002.3.25>

④ 料金の 徵收에 關하여는 地方稅徵收의 例에 依한다.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第10條(엔지니어링事業代價의 기준) ① 第5條第1項 各號의 者는 엔지니어링活動主體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成果品의 質을 保障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事業에 對하여 적정한 代價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엔지니어링事業에 對한 적정한 代價의 기준은 協會가 지식경제부장관의 認可를 받아 定한다. <개정 1998.12.28, 2001.1.16,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엔지니어링事業代價의 기준을 認可하는 경우 기획

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8.12.28, 1999.5.24, 2008.2.29>

○ 민법

第163條(3年の 短期消滅時效) 다음 各號의 債權은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改正 1997.12.13>

1. 利子, 扶養料, 給料, 使用料 其他 1年以內의 期間으로 定한 金錢 또는 物件의 支給을 目的으로 한 債權
2. 醫師, 助産師, 看護師 및 藥師의 治療, 勤勞 및 調劑에 關한 債權
3. 都給받은 者, 技師 其他 工事의 設計 또는 監督에 從事하는 者의 工事に 關한 債權
4.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및 法務士에 對한 職務上 保管한 書類의 返還을 請求하는 債權
5.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및 法務士의 職務에 關한 債權
6. 生産者 및 商人이 販賣한 生産物 및 商品의 代價
7. 手工業者 및 製造者의 業務에 關한 債權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현행 조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 제정 1979. 07. 09 조례 제350호
- 개정 1980. 03. 01 조례 제367호
- 개정 1980. 05. 01 조례 제370호
- 개정 1980. 07. 02 조례 제375호
- 개정 1981. 01. 01 조례 제420호
- 개정 1981. 06. 29 조례 제444호
- 개정 1982. 01. 08 조례 제454호
- 개정 1982. 04. 30 조례 제513호
- 개정 1983. 07. 15 조례 제595호
- 개정 1983. 12. 05 조례 제602호
- 개정 1984. 01. 23 조례 제604호
- 개정 1984. 07. 20 조례 제678호
- 개정 1984. 07. 30 조례 제680호
- 개정 1984. 10. 15 조례 제685호
- 개정 1985. 06. 29 조례 제715호
- 개정 1985. 07. 28 조례 제718호
- 개정 1985. 10. 10 조례 제723호
- 개정 1986. 03. 29 조례 제756호
- 개정 1986. 06. 20 조례 제768호
- 개정 1987. 05. 13 조례 제823호
- 개정 1988. 01. 18 조례 제859호
- 개정 1989. 03. 04 조례 제948호
- 개정 1989. 03. 17 조례 제950호
- 개정 1989. 03. 28 조례 제952호
- 개정 1989. 04. 22 조례 제959호
- 개정 1989. 06. 23 조례 제973호
- 개정 1990. 02. 12 조례 제1039호
- 개정 1991. 01. 22 조례 제1096호
- 개정 1992. 10. 06 조례 제1203호
- 개정 1994. 05. 31 조례 제1287호
- 개정 1995. 01. 14 조례 제1323호
- 개정 1996. 05. 21 조례 제1418호
- 개정 1996. 11. 19 조례 제1466호
- 개정 1997. 12. 31 조례 제1554호
- 개정 1997. 12. 31 조례 제1555호
- 개정 1999. 02. 18 조례 제1632호
- 개정 1999. 07. 29 조례 제1678호
- 개정 2000. 02. 10 조례 제1726호
- 개정 2000. 07. 29 조례 제1771호
- 개정 2001. 01. 12 조례 제1805호
- 개정 2001. 09. 29 조례 제1854호
- 개정 2002. 02. 09 조례 제1871호

개정 2002. 08. 16 조례 제1893호
개정 2003. 11. 06 조례 제1985호
개정 2005. 09. 30 조례 제2116호
개정 2006. 10. 09 조례 제2180호
개정 2007. 11. 15 조례 제226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수도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4조, 제32조, 제65조와 「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급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공사"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흡수정이하의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인입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6.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전용계량기"란 전용 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9.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10. "호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요금부과를 위하여 점검 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수도 계량기를 말한다.
11. "점검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급수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호별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그 밖의 비상 시 긴급히 급수를 한 때에는 다음 회기때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공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공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또는 동일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수전분리공사 다만, 흡수정이하의장치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이하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공사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를 제외하고는 설계수수료(현장측량, 수리계산수수료 등)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③ 설계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용 이외의 계량기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단일건물의 급수공사는 설계금액을 확정된 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이하의장치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용가에게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다만, 흡수정이하의장치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이하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제6조의2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치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급수공사 준공 후에 정산한다. <개정 2007.11.15>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를 납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 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 공급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5.09.30, 2007.11.15>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5,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 교부 수수료

가.신규 1건당 10,000원

나.갱신 1건당 5,000원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7.11.15>

② 급수장치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까지의 시설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7.11.15>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다만, 호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호별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7.11.15>

④ 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에서부터 건물 안쪽의 급수장치에 대한 피해 방지, 동파방지 등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개정 2007.11.15>

제10조(공사비의 산출) ① 급수공사비는 실공사거리(실거리제)로 산정한다.

②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하며,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은 「부천시 급수공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행업자의 시공비 정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15>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 안에서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5.09.30, 2007.11.15>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15>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은 「부천시 급수공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행업자의 시공비 정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제12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통합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2007.11.15>

③ 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 등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④ 타 용도와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고,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분 되었으며, 호별 분양 또는 임대되는 건축물은 제2항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07.11.15>

제14조(흡수정이하의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② 흡수정이하의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가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③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장치를 할 수 없다.

제15조(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징수 및 공사의 직권시행) ①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납부서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부담금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다.

② 수도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개정 2007.11.15>

③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의 복구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확인 추적하여 시설물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괴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시에서 복구한다. <개정 2007.11.15>

④ 부담금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자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15>

제3장 급수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 손괴자, 원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09.30, 2007.11.15>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송배, 급수관과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7. 급수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8.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 공용급수와 운반급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③ 공설 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제20조 (삭제) <1988.01.08>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원,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07.11.15>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07.11.15>

② 삭제<2005.09.30>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11.15>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은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11.15>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5.09.30, 2007.11.14>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7.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7.11.15>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07.11.15>

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효율표에 따른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량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시장이 호별계량기와 점검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호별계량기에 한하여 계량기 구경별 정

액요금을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7.11.15]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효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제3호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 사용량이 많은 업소의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을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장치를 분리설치한 후에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③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에서 세대당 월 15입방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개정 2003.11.06, 2007.11.15>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누수의 경우에는 4개월 평균량은 효율의 정상적인 요금부과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은 가정용에는 1단계의 효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업종은 2단계 효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개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1. 급수설비가 폐전될 때
2. 급수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급수중지를 해제하고자 할 때
4.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
5. 시장이 수시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④ 1호 또는 1개소의 수도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가산한다. <개정 2007.11.15>

⑤ 동일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간 분리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 사용요금은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05.09.30, 2007.11.15>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4개월의 평균치를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전 4개월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의 평균치는 규칙으로 정한다.<단서신설 2005.09.30><개정 2007.11.15>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효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효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07.11.15>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7.11.15>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 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 또는 격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삭제)

제33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등이 제26조에 따른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수도요금고지서로 한다. <개정 2007.11.15>

③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7.11.15>

④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수도요금(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량요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15>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2007.11.15>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 당월분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일시 급수사용금과 선납) ① 시장은 일시적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7.11.15>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에 이를 정산하되 과부족액은 다음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2007.11.15>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2007.11.15>

1. 제6조제2항의 설계 수수료:수용가세대당 4,000원. 다만, 가정용 이외의 계량기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단일건물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다.

2. 제7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4,000원

3. 제7조제2항의 준공검사 수수료:4,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의 시험수수료

가.계량기 구경 40 미만 2,000원

나.계량기 구경 40 이상 6,000원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급수관 구경 40 미만 5,000원

나.급수관 구경 40 이상 10,000원

제37조(요금등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③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7.11.15>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과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④ 상수도 요금 자동납부 수용가는 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월 5,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⑤ 가정용 수도사용자 중에서 자가 검침 참여자에 대하여는 1회당 500원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6.10.09>

제5장 관리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급수장치 및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2007.11.15>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개정 2007.11.15>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2007.11.15>

제40조 (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5.09.30, 2007.11.15>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삭제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를 위반하여 급수 판매한 자

9. 삭제

10.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11.15>

제40조의2 (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11.15>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담당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처분금액 100분의 5)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공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07.11.15>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2007.11.15>

제41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태료)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2007.11.15>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2007.1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된다. <개정2007.11.15>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의 검침, 점검, 고지서송달 등의 업무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7.11.15>

② 삭제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07.11.15>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2007.11.15>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7.11.15>

제45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2007.11.15>

제46조(삭제) <2005.09.30>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7.11.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7. 1. 1일자 부천시 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7. 1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 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6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09.30 조례 제2116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0.09. 조례 제2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